



호주 증권투자위원회, 로보어드바이스 규제지침서(안) 발표

권오경 연구원

요약

-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2016년 3월 로보어드바이스 규제지침서 초안을 발표하였음. 주요 내용은 최소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로보어드바이스 알고리즘에 대하여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임. 동 지침서를 통해 호주는 로보어드바이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음.

- 호주 증권투자위원회(ASIC)¹⁾는 2016년 3월 디지털 금융상품 자문 관련 규제의 하나로 의견수렴서(consultation paper)²⁾와 규제지침서(regulatory guide) 초안³⁾을 발표함.

- 디지털 금융상품 자문은 로보어드바이스(robo-advice)로 알려져 있으며, 알고리즘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화된 금융상품 자문(automated financial product advice)을 의미함.
 - 이 과정에서 사람(human adviser)의 직접적인 개입은 배제됨.
- ASIC는 3월 발표된 초안을 근거로 5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16년 8월에 규제지침서를 최종 발표할 계획임.

- ASIC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로보어드바이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저렴한 금융자문을 제공하고자 함.

- 호주에서 로보어드바이스 시장은 2014년 이후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, 호주금융서비스면허(AFSL)⁴⁾의 신규 소지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임.
 - 호주에서 금융자문을 위해서는 AFSL이 필요하며 로보어드바이스에도 적용됨.
- 호주 성인의 약 20%만이 개인자문(personal advice)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⁵⁾ 편리하고 저렴

1) Australian Securities & Investments Commission.

2) ASIC(2016. 3), *Consultation Paper 254: Regulating digital financial product advice*.

3) ASIC(2016. 3), *Regulatory Guide 000: Providing digital financial product advice to retail clients*.

4)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.

한 로보어드바이스 시장의 잠재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.

- 호주 회사법(Corporations Act s766B(3))에 따르면 개인자문⁶⁾은 개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자문을 의미함.
- 호주의 금융상품 자문은 투자포트폴리오 구성부터 종합적인 금융상품⁷⁾에 대한 자문까지 포함⁸⁾

■ 동 지침서는 로보어드바이스 면허를 받으면 최소한 1인의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, 기존의 자문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

- AFSL 소지자는 호주 회사법(Corporations Act s912(1)(e))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⁹⁾ 이에 로보어드바이스 책임자도 최소한의 훈련 및 기능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.
 - 이러한 자격요건이 로보어드바이저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, 자연인(自然人)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격요건을 부여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.
 - 기존 면허 소지자들을 감안하여 지침서의 시행시기를 6개월 경과 후로 제안하고 있음.

■ 또한 금융자문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동 지침서에 따라 면허 소지 로보어드바이스 제공자는 금융상품 자문을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.

- 알고리즘은 시스템 디자인, 테스트 계획, 보안, 업데이트, 인적 및 기술적 지원 측면에서 모니터링과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하며, 자연인 자문업자에 의해 규제준수가 검토되어야 함.
-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지체 없이 시정되어야 하며 시정기간 동안의 자문 제공은 중단됨.

■ 종합해 보면, 호주의 로보어드바이스 규제지침서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시장참여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발전의 강간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됨. **kiri**

-
- 5) 호주에서는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에 따라 소비자가 자문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일반대중의 자문시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.
 - 6) 금융상품 자문은 일반자문(general advice)과 개인자문(personal advice)으로 나뉘며, 이 둘의 차이는 개인정보에 근거하여 자문을 하느냐의 차이임.
 - 7) 호주에서의 자문대상 금융상품에는 은행상품(basic banking products), 보험상품(general insurance) 또는 복합적인 상품(combination of any of these products)으로 포괄적인 금융상품까지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투자자문부터 재무설계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.
 - 8) 국내에서의 자문은 투자자문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의미하여 호주보다 좁은 의미의 자문에 해당됨(자본시장법 §6).
 - 9) 자문업자의 자격요건으로는 학력, 시험, 경력 및 전문성 개발 등으로 구성된 5가지 옵션 중 한 가지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(Regulatory Guide 105 *Licensing: Organisational competence*).